# 「투자법」

## □ 개 요

미얀마의 「투자법」은 2016년 법률 제40호로 같은 해 10월 18일에 제정되었다. 이 법은 내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법으로,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전의 투자법보다 전반적으로 규정이 명확해졌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 및 투자자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.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(Myanmar Investment Committee, MIC)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명시하지 않은 투자는 MI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였다.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6년 제정 당시의 원문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.

## □ 목 차


| 원문 | 번역문 |
|---|---|
| Chapter I Title and Definition | 제1장 명칭 및 정의 |
| Chapter II Objective | 제2장 목적 |
| Chapter III Scope of the Law | 제3장 적용 범위 |

| | |
|---|---|
|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ommission | 제4장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설립 |
| Chapter V Resignation, Dismissal from the Commission and Appointment for Vacancy | 제5장 위원회 구성원의 사임, 해고 및 임명 |
| Chapter VI Duties and Powers of the Commission | 제6장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|
| Chapter VII Convening of Meeting | 제7장 회의 소집 |
| Chapter VIII Submission of Proposal | 제8장 투자제안서 제출 |
| Chapter IX Submission of Endorsement Application | 제9장 신청서 제출 |
| Chapter X Stipulation of the Types of Investment Businesses | 제10장 투자 사업의 유형별 규정 |
| Chapter XI Treatment of Investors | 제11장 투자자에 대한 대우 |
| Chapter XII Rights to Use Land | 제12장 토지 이용권 |
| Chapter XIII Employment of Staff and Workers | 제13장 직원 및 근로자 고용 |
| Chapter XIV Investment Guarantee | 제14장 투자 보증 |
| Chapter XV Transfer of Funds | 제15장 자금의 송금 |
| Chapter XVI Responsibilities of Investors | 제16장 투자자의 책임 |

| | |
|---|---|
| Chapter XVII Insurance | 제17장 보험 |
| Chapter XVIII Exemptions and Reliefs | 제18장 세금 면제 및 경감 |
| Chapter XIX Settlement of Dispute | 제19장 분쟁의 조정 |
| Chapter XX Administrative Penalties | 제20장 행정처분 |
| Chapter XXI Exceptions | 제21장 예외 |
| Chapter XXII Security Exception | 제22장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|
| Chapter XXIII Miscellaneous | 제23장 그 밖의 조항 |